

보 도 자 료

배포일시	2026. 8. 18.(화)
배포부서	홍보팀 (02-3219-5110~5112)
자료문의	법질서보호팀 지경규 팀장(02-3219-5130)
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(www.kocsc.or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	

방미심위, 해외 예측시장 ‘폴리마켓’ 사행성 인정, ‘접속차단’ 의결

- 우연에 기댄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로 사행심 조장...불법 도박장소 개설로 판단 -

- 불법 도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‘폴리마켓 (Polymarket)’이 국내에서도 사행성이 인정돼 시정요구(접속차단) 조치가 내려졌다.

 -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(위원장 고광현, 이하 ‘방미심위’)는 18일(화) 통신심의 소위원회(위원장 김우석, 이하 ‘통신소위’)를 개최하고, 폴리마켓이 「형법」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상 ‘유사행위’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(접속차단)를 의결했다.
 -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 7월 6일 통신소위에서 폴리마켓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, 이날 폴리마켓 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.
- 방미심위는 정치·경제·국제관계·스포츠·선거·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.

 -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,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·관리하고, 가상자산의 입·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 및 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, 지분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.

- 심의에 앞서 경찰청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,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수렴했으며, 해당 기관들은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이 국내 법률상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■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제거하였고,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“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”면서, “비수탁형 P2P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※에 의해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, ‘주재자’에 해당하지 않고, 직접적으로 자금을 집금·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, 「형법」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위반 요건이나 ‘사행행위’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”고 주장했다.

※ 스마트 컨트랙트: 블록체인(탈중앙화 기술)에서 계약 조건을 코드로 구현해, 조건이 충족되면 중개자 없이 자동으로 실행·이행되도록 하는 기술

- 그러나 방미심위는 “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및 중앙 집중형 기술(거래 인터페이스, 오더북 등)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”면서,
- “‘8월 서울 강수량’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,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”고 밝혔다.

■ 한편, 프랑스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베팅의 경우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6일부터 폴리마켓의 접속을 차단했다.

- 호주와 독일 또한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 또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베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5년 8월과 9월 각각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.